「소년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168호
- **공 포 일**: 1950년 7월 15일
- **개 정 일** : 2016년 6월 3일

원문	번역문
第三章 少年の刑事事件 第一節 通則 第四十条（準拠法例） 少年の刑事事件については、この法律で定めるものの外、一般の例による。 第二節 手続 第四十一条（司法警察員の送致） 司法警察員は、少年の被疑事件について捜査を遂げた結果、罰金以下の刑にあたる犯罪の嫌疑があるものと思料するときは、これを家庭裁判所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犯罪の嫌疑がない場合でも、家庭裁判所の審判	제3장 소년의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0조(준거법례)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제2절 절차 제41조(사법경찰관의 송치) 사법경찰관은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이를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라도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쳐야

に付すべき事由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同様である。	할 사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도 그러하다.
第四十二条（検察官の送致） 検察官は、少年の被疑事件について捜査を遂げた結果、犯罪の嫌疑があるものと思料するときは、第四十五条第五号本文に規定する場合を除いて、これを家庭裁判所に送致しなければならない。犯罪の嫌疑がない場合でも、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すべき事由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同様である。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刑事訴訟法の規定に基づく裁判官による被疑者についての弁護人の選任は、その効力を失う。	**제42조**(검찰관의 송치) ① 검찰관은 소년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제45조제4호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라도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쳐야 할 사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선임은 그 효력을 잃는다.
第四十三条（勾留に代る措置） 検察官は、少年の被疑事件においては、裁判官に対して、勾留の請求に代え、第十七条第一項の措置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第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措置は、家庭裁判所の裁判官に対して、これ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請求を受けた裁判官は、第十七条第一項の措置に関して、家庭裁判所と同一の権限を有する。 ３　検察官は、少年の被疑事件においては、やむを得ない場合で	**제43조**(구류를 대신하는 조치) ① 검찰관은 소년의 피의사건에서는 재판관에게 구류 청구를 대신하여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는 가정재판소 재판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재판관은 제17조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가정재판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검찰관은 소년의 피의사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재판관에게 구류를 청구할 수 있다.

なければ、裁判官に対して、勾留を請求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四十四条（勾留に代る措置の効力） 裁判官が前条第一項の請求に基いて第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措置をとつた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捜査を遂げた結果、事件を家庭裁判所に送致しないときは、直ちに、裁判官に対して、その措置の取消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官が前条第一項の請求に基いて第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措置をとるときは、令状を発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措置の効力は、その請求をした日から十日とする。	**제44조**(구류를 대신하는 조치의 효력) ① 재판관이 제43조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검찰관은 수사한 결과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재판관에게 그 조치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 제43조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의 효력은 청구한 날부터 10일로 한다.
第四十五条（検察官へ送致後の取扱い） 家庭裁判所が、第二十条の規定によつて事件を検察官に送致したときは、次の例による。 一　第十七条第一項第一号の措置は、その少年の事件が再び家庭裁判所に送致された場合を除いて、検察官が事件の送致を受けた日から十日以内に公訴が提起されないときは、その効力を失う。公訴が提起されたときは、裁判所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を	**제45조**(검찰관에의 송치 후의 대처) 가정재판소는 제20조에 따라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한 때에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의 조치는 그 소년 사건이 다시 가정재판소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관이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재판소는 검찰관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もつて、いつでも、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이를 취소할 수 있다.
二 前号の措置の継続中、勾留状が発せられたときは、その措置は、これによつて、その効力を失う。	2. 제1호의 조치의 계속 중 구류장이 발부된 때에는 그 조치는 이로써 그 효력을 잃는다.
三 第一号の措置は、その少年が満二十歳に達した後も、引き続きその効力を有する。	3. 제1호의 조치는 그 소년이 만 20세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효력을 가진다.
四 第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措置は、これを裁判官のした勾留とみなし、その期間は、検察官が事件の送致を受けた日から、これを起算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事件が先に勾留状の発せられた事件であるときは、この期間は、これを延長することができない。	4.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는 재판관이 한 구류로 보아 그 기간은 검찰관이 사건을 송치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에 그 사건이 먼저 구류장이 발부된 사건인 때에는 이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五 検察官は、家庭裁判所から送致を受けた事件について、公訴を提起するに足りる犯罪の嫌疑があると思料するときは、公訴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送致を受けた事件の一部について公訴を提起するに足りる犯罪の嫌疑がないか、又は犯罪の情状等に影響を及ぼすべき新たな事情を発見したため、訴追を相当でないと思料す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送致後の情況により訴追を相当でないと思	5. 검찰관은 가정재판소가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송치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의 정상(情状) 등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정을 발견하여 소추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치 후 정황에 따라 소추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料するときも、同様である。 六 少年又は保護者が選任した弁護士である付添人は、これを弁護人とみなす。 七 第四号の規定により第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措置が裁判官のした勾留とみなされた場合には、勾留状が発せられているものとみなして、刑事訴訟法中、裁判官による被疑者についての弁護人の選任に関する規定を適用する。	때에도 그러하다. 6. 소년 또는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사인 보조인은 변호인으로 본다. 7. 제4호에 따라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가 재판관이 한 구류로 간주된 경우에는 구류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중 재판관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第四十五条の二 前条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七号の規定は、家庭裁判所が、第十九条第二項又は第二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事件を検察官に送致した場合に準用する。	**제45조의2** 제4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는 가정재판소가 제19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四十五条の三（訴訟費用の負担） 家庭裁判所が、先に裁判官により被疑者のため弁護人が付された事件について第二十三条第二項又は第二十四条第一項の決定をするときは、刑事訴訟法中、訴訟費用の負担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百八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中「刑の言渡」とあるのは、「保護処分の決定」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제45조의3**(소송비용의 부담) ① 가정재판소가 먼저 재판관에 의하여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및 제2항 중 “형의 선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대체한다.

2　検察官は、家庭裁判所が少年に訴訟費用の負担を命ずる裁判をした事件について、その裁判を執行するため必要な限度で、最高裁判所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事件の記録及び証拠物を閲覧し、及び謄写することができる。	② 검찰관은 가정재판소가 소년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하는 재판을 한 사건에 대하여 그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최고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第四十六条（保護処分等の効力） 罪を犯した少年に対して第二十四条第一項の保護処分がなされたときは、審判を経た事件について、刑事訴追をし、又は家庭裁判所の審判に付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の決定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同項の決定があつた事件につき、審判に付すべき事由の存在が認められないこと又は保護処分に付する必要がないことを理由とした保護処分に付さない旨の決定が確定したときは、その事件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第一項の規定は、第二十七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保護処分の取消しの決定が確定した事件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ただし、当該事件につき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そ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第二十二条の二第一項の決定がされた場合であつて、その取消しの理由が審判に付すべき事由の存在が認められ	**제46조**(보호처분 등의 효력) ①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의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하거나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부치지 못한다. ② 제22조의2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에 부쳐야 할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어 보호처분에 부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예에 따르는 제22조의2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에 부쳐야 할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

ないこと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취소의 이유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四十七条（時効の停止） 第八条第一項前段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十一条の決定があつてから、第八条第一項後段の場合においては送致を受けてから、保護処分の決定が確定するまで、公訴の時効は、その進行を停止する。 ２　前項の規定は、第二十一条の決定又は送致の後、本人が満二十歳に達した事件についても、これを適用する。	**제47조**(시효의 정지) ① 제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는 제21조의 결정이 있은 후부터, 제8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송치된 후부터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은 제21조의 결정 또는 송치 후 본인이 만 20세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第四十八条（勾留） 勾留状は、やむを得ない場合でなければ、少年に対して、これを発することはできない。 ２　少年を勾留する場合には、少年鑑別所にこれを拘禁することができる。 ３　本人が満二十歳に達した後でも、引き続き前項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る。	**제48조**(구류) ① 구류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년에게 발부할 수 있다. ② 소년을 구류하는 경우에는 소년감별소에 구금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만20세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제2항에 따라 구금할 수 있다.
第四十九条（取扱いの分離） 少年の被疑者又は被告人は、他の被疑者又は被告人と分離して、なるべく、その接触を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少年に対する被告事件は、他の被告事件と関連する場合にも、審理に妨げない限り、その	**제49조**(처우의 분리) ① 소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분리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②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은 다른 피고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手続を分離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刑事施設、留置施設及び海上保安留置施設においては、少年（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法律第五十号）第二条第四号の受刑者（同条第八号の未決拘禁者としての地位を有するものを除く。）を除く。）を成人と分離して収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	심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③ 형사시설, 유치시설 및 해상보안유치시설에서는 소년[「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평성17<>년 법률 제50호) 제2조제4호의 수형자(같은 조 제8호의 미결구금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을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第五十条（審理の方針） 少年に対する刑事事件の審理は、第九条の趣旨に従つて、これ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제50조**(심리의 방침)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제9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第三節 処分	**제3절 처분**
第五十一条（死刑と無期刑の緩和） 罪を犯すとき十八歳に満たない者に対しては、死刑をもつて処断すべきときは、無期刑を科する。 2 罪を犯すとき十八歳に満たない者に対しては、無期刑をもつて処断すべきときであつても、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科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刑は、十年以上二十年以下において言い渡す。	**제51조**(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무기형을 부과한다. ②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무기형을 선고할 때라도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형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를 선고한다.

第五十二条（不定期刑） 少年に対して有期の懲役又は禁錮をもつて処断すべきときは、処断すべき刑の範囲内において、長期を定めるとともに、長期の二分の一（長期が十年を下回るときは、長期から五年を減じた期間。次項において同じ。）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短期を定めて、これを言い渡す。この場合において、長期は十五年、短期は十年を超えることはできない。	**제52조**(부정기형) ① 소년에 대해 유기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長期)를 정하고, 장기의 2분의1(장기가 10년이하인 때에는 그 기간에서 5년을 뺀 기간. 제2항에서 같다) 이하의 범위에서 단기(短期)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 경우에 장기는 15년, 단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前項の短期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少年の改善更生の可能性その他の事情を考慮し特に必要があるときは、処断すべき刑の短期の二分の一を下回らず、かつ、長期の二分の一を下回らない範囲内において、これ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刑法第十四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② 제1항의 단기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개선·갱생의 가능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선고하여야 할 형의 단기의 2분의1 이하, 장기의 2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3　刑の執行猶予の言渡をする場合には、前二項の規定は、これを適用しない。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十三条（少年鑑別所収容中の日数） 第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措置がとられた場合においては、少年鑑別所に収容中の日数は、これを未決勾留の日数とみなす。	**제53조**(소년감별소 수용 중 일수) 제17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소년감별소 수용 중 일수는 미결구류 일수로 본다.

第五十四条（換刑処分の禁止） 少年に対しては、労役場留置の言渡をしない。	**제54조**(환형처분의 금지)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第五十五条（家庭裁判所への移送） 裁判所は、事実審理の結果、少年の被告人を保護処分に付するのが相当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決定をもつて、事件を家庭裁判所に移送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55조**(가정재판소에의 이송) 재판소는 사실심리의 결과 소년인 피고인을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가정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第五十六条（懲役又は禁錮の執行） 懲役又は禁錮の言渡しを受けた少年（第三項の規定により少年院において刑の執行を受ける者を除く。）に対しては、特に設けた刑事施設又は刑事施設若しくは留置施設内の特に分界を設けた場所において、その刑を執行する。 ２　本人が満二十歳に達した後でも、満二十六歳に達するまでは、前項の規定による執行を継続することができる。 ３　懲役又は禁錮の言渡しを受けた十六歳に満たない少年に対しては、刑法第十二条第二項又は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十六歳に達するまでの間、少年院において、その刑を執行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	**제56조**(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제4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는 특별히 설치한 형사시설 또는 형사시설이나 유치시설 내의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② 본인이 만20세가 된 후에도 만26세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16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6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소년은 교정교육을 받는다.

合において、その少年には、矯正教育を授ける。	
第五十七条（刑の執行と保護処分） 保護処分の継続中、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が確定したときは、先に刑を執行する。懲役、禁錮又は拘留の刑が確定してその執行前保護処分がなされたときも、同様である。	**제57조**(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계속 중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먼저 형을 집행한다.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 전 보호처분을 한 때에도 같다.
第五十八条（仮釈放） 少年のとき懲役又は禁錮の言渡し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次の期間を経過した後、仮釈放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無期刑については七年 二　第五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言い渡した有期の刑については、その刑期の三分の一 三　第五十二条第一項又は同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り言い渡した刑については、その刑の短期の三分の一 2　第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無期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前項第一号の規定は適用しない。	**제58조**(가석방)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 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 2. 제51조제2항에 따라 선고한 유기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1 3. 제5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고한 형의 경우에는 그 형의 단기의 3분의1 ② 제51조제1항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五十九条（仮釈放期間の終了） 少年のとき無期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仮釈放後、その処分を取り消されないで十年を経過	**제59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① 무기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난 때에

したときは、刑の執行を受け終わつたものとする。 2　少年のとき第五十一条第二項又は第五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同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り有期の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仮釈放後、その処分を取り消されないで仮釈放前に刑の執行を受けた期間と同一の期間又は第五十一条第二項の刑期若しくは第五十二条第一項の長期を経過したときは、そのいずれか早い時期において、刑の執行を受け終わつたものとする。	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② 제51조제2항 또는 제52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형의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제51조제2항의 형기나 제52조제1항의 장기가 지난 때에는 그 중 빠른 시기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第六十条（人の資格に関する法令の適用） 少年のとき犯した罪により刑に処せられてその執行を受け終り、又は執行の免除を受けた者は、人の資格に関する法令の適用については、将来に向つて刑の言渡を受けなかつたものとみなす。 2　少年のとき犯した罪について刑に処せられた者で刑の執行猶予の言渡を受けた者は、その猶予期間中、刑の執行を受け終つたもの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刑の執行猶予の言渡を取り消されたときは、人の資格に関する法令の適用については、その取り消さ	**제60조**(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자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중 형의 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때에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때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れたとき、刑の言渡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